

'04. 12. 20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기획행정위원회

-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2004. 12. 20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제출 및 회부일자
 - 제출일자 : 2004년 12월 7일
 -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8일
- 상정일자 :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 - 2004. 12. 15 :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)

- 제안 이유
 - 민간위탁사무중 『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』 사무를 보조사업으로 전환 삭제하고자 함
- 주요 내용
 - 국제통상과 소관 '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'를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)

-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제통상과 소관 “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”사무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사무(수탁기관의 정의와 책임)에 부적합하여 이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,
-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보조사업으로 전환될시 앞으로 달라지는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등의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됨.

※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정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※ 위임·위탁사무의 정의

- 사무위임 :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중 일부를 보조 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권한과 책임을 행하도록 하는 것임
- 위탁사무 :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중 일부를 하위 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기관·단체·민간에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임
- 대행사무 :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의 정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와 대행기관이 그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하는 것으로 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민간위탁사무중 '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' 사무를 보조사업으로 전환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국제통상과 소관 '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'를 삭제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국제통상과 소관 제4호를 삭제하고,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8호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【별표】

현행					개정안				
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 사무명	위탁대상 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	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 사무명	위탁대상 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국 제 통상과	4	○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	대한무역진 흥공사 중 북무역관	중소기업기 본법 제14조		4~8	<삭 제>		
	5~9								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95조(사무의 위임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무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【충청북도사무위탁관리조례】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소관 사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